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우식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

2022. 12. 5.(월)

제목

「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」 적극 운영으로
체불임금 합계 4억 1,857만 원 상당 피해 회복

- 대구지검 형사4부(부장검사 서경원)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'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' 운영과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 강제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「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」을 시행 중임
- 2022. 7. 이후 총 75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합계 4억 2,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게 하였고,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

I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 운영 결과

■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 설치 및 검사면담 제도 운영

- (전담검사실 설치 후 적극적 면담) 2022. 10.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
 - 사업주의 임금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,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 사건 등을 선별한 후, 검사가 직접 사업주나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오해를 풀고, 합의점을 도출
 -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합의기간을 부여하고, 합의사항이 이행된 사건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함으로써 갈등을 해소
- (운영 성과)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2022. 7. ~ 11. 총 75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합계 418,576,297원이 지급되는 등 피해 회복

※ 대구지검은 2022. 5.경 검사실의 조정 등을 통해 한 달간 근로자 24명(임금 총 1억 3,000만원 상당)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△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, △근로자에게는 실질적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한바 있음

▣ 출석거부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

- (출석거부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) 2021. 9.부터 임금 체불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체불액을 불문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, 소재불명인 2,000만 원 이상 다액 체불자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적극 청구하여 지명수배 조치
- (피해자 다수 사건 적극 수사) 2022. 10.부터 체불액과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주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한 결과, 최근 1년간 임금체불사범 4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, 출석거부자 11명을 체포한 후 조사하여,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회복 가능성 제고

II

주요 사례

▣ 피해회복 중심의 절차 진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

출국으로 임금을 받기 곤란해진 외국인 근로자 보호

- ▶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4개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, 검찰 처분 전 스리랑카로 귀국
- ▶ 검사는 사건 송치 후 고소인 출국전,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2회 소환 및 면담 하여, 체불액수를 1,800만 원으로 확정
- ▶ 사업주는 일시금 지급이 곤란함을, 근로자는 이미 형사조정절차에 불출석한 사업주를 믿을 수 없고,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사정으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움을 호소
- ▶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변제계획(1,400만 원 일시 지급, 잔금 400만 원은 100만 원씩 매달 분할 지급)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에게 전달 후 ‘국제송금이 가능한 계좌번호를 주면 매달 검사실에서 변제 여부를 확인하겠다.’고 약속
- ▶ 근로자 출국 후 4달간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연락을 유지하면서,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송금한 내역 제출받아, 체불 임금 전액 입금 확인 후 불기소 처분

체불임금으로 귀국을 못하고 있던 산업연수생 보호

- ▶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(산업연수생) 근로자가 2년간 야간 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, 전액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출국할 수 없다며 체류 기간 연장하며 검찰청 3회 방문
- ▶ 검사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이견을 조정하여 실제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금액(800만 원)을 체불금액으로 확정된 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, 사업주에게 수회 조속한 지급 권유
 - ※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연계시켜주어 체불임금 산정에 대한 질문 및 신속한 사건처리 요청을 한국어로 서면화하고, 이에 대해 검찰에서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수회 면담 진행
- ▶ 근로자가 파키스탄으로 출국 전 체불임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나, 근로자 출국 후 체불 임금 전액 입금 확인사실 및 고소 취소 의사 확인하여 불기소 처분

▣ 검사실의 적극적 조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견 해소

- 체불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해 다투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검사가 직접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면담, 노동청에서 파악되지 않은 근로계약서, 출퇴근기록부 등을 추가로 확보
- 검사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각 자료들을 토대로 적법하게 재산정한 체불임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조정된 임금(2,200만 원)을 실지급
- 피해회복 후 고소취소되어 사업주에 대하여 불기소(공소권없음) 처분

III

향후 계획

-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체불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
- 또한,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음 ☑